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2024. 1.

입 법 정 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4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	6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7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8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	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0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3
1.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4
2.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15
3.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6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7
1. 공익소송 시 비용 지원 관련(전북 완주)	18
2. 꽃자왈 보호지역 중 일부지역 별도 지정 관련(제주)	21
3.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련(충북 청주)	23
IV. 국외 입법례	27
1.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28

I .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7837호, 2021. 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함.(안 제7조의2제2항)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6항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7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 라. 징수공무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등 수색 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 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을 포함시키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65조, 제67조).

□ 개정이유

- 가.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라.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마. 현행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국가 등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제2조의4 및 제51조의2 신설 등).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5항).
- 다.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제3호).
- 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등 실태조사를 정비함(안 제51조의4·제51조의6).

□ 개정이유

-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종전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추가
(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2항 일부삭제)
-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27조 일부삭제)

□ 개정이유

- 현행법에서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26.2.14.) 존속되도록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2항).

□ 개정이유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화함(안 제2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허가권자를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함(안 제9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요청 근거,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등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체계적·안정적 구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 개정이유

-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주요내용

- 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제25조제5항 신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등으로 정함.
- 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확대(제43조제1항)
- 역세권 주변의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4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
 - 2)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허용(별표 20 및 부칙 제2조)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 밀집도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공포 후 3년부터 7년까지 지역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함.
- 마.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허용(별표 21)
- 종전에는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9.] [충청남도 조례 제5554호, 2023. 12. 29., 제정]

□ 제정이유

- 성인이 되어도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재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은 고립된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주체와 방법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시·도별 현황

- 서울, 세종, 대구, 제주

2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3.] [부산광역시 조례 제7174호, 2024. 1. 3., 제정]

□ 제정이유

-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 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토록 하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를 정함. (안 제4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

□ 관계법령

-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도별 현황

- 서울, 대구, 세종, 광주, 제주

3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4.] [경상북도 조례 제4983호, 2024. 1. 4., 제정]

□ 제정이유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전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묻지마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는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시·도별 현황

- 서울, 경기, 경북

III. 自治法規 입법의견 해석례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견23-0372] 전라북도 완주군

□ 질의요지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완주군조례안”이라 한다)은 군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소송’이란 군민이 당사자인 소송 중 완주군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군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가목),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완주군조례안 제2조제2호의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사무가 완주군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확정하는 단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군민에게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익(公益)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외교·국방·사법(司法) 등의 국가사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의 소송물이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귀 군의 사무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귀 군의 공익소송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의 소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에서 공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국가 차원의 법률 구조 수단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28. 의견제시 21-0261 참조).

따라서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갯자왓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자왓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관련)

[의견23-0390] 제주특별자치도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갯자왓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자왓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갯자왓”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갯자왓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자왓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도에서는 도지사가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갯자왓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갯자왓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갯자왓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자왓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같은 항을 근거로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갯자왓 중 일부 지역을 갯자왓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1.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에서는 제주자치도는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갯자왓을 보전하는 사무는 제주자치도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도에서는 갯자왓을 보전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귀 도에서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갯자왓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자왓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도지사가 갯자왓의 보전을 위하여 갯자왓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자왓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을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의견23-0448] 충청북도 청주시

□ 질의요지

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중 일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을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3. 20. 의견제시 20-0066 참조).

「주차장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청주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참조; 법제처 2019. 10. 30. 의견제시 19-0342 참조) 주차요금을 징수 또는 감면할 것인지 여부, 징수 시 그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차요금을 이용시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종에 대하여 단일한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장이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차수요 및 주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을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IV. 국외 입법례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5호[통권 제237호] [2023. 11. 28.]

- 2023년 5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에 해당하는 약 152만 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청·장년층은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불안, 70대 이상 노인층은 정서적 불안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대부분 안부 확인이거나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생사 확인 등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는 2004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과 30세 미만의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에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법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443호)

■ 주 제 어 : 고독사/고독사예방/ELAN 법률/세대 간 동거계약/세대 간 동거계약 중개협회/쁘띠서비스

도입

- ◆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고독사 개념에 관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내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총 1만 5066명이었으며,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은 매년 1% 내외 증가 추세에 있다.
- ◆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입하여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 등의 사전예방 정책보다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의한 대면 안부확인 등에만 머물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 ◆ 프랑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세대 간 동거계약(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solidair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계약으로 인해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가 가능하고, 계약에 따라 약간의 수입과 작지만 의미있는 브띠서비스(Petits services) 등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의 ‘세대간 동거계약’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26.5%를 차지하고 있다.¹⁾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1. 계약 개념

- ◆ 프랑스의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LOI n° 2018-1021 du 23 novembre 2018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일명 ELAN 법률」²⁾ 제117조에 따르면 ‘세대 간 동거계약’이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30세 미만의 자가 쉽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1) 프랑스 생태전환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2022년 3월 보고서, p. 8.

2) ELAN 법률은 세대 간 동거계약 개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전」, 「건축 및 주택법전」,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등에 명시된 계약 관련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자는 홀로 사는 60세 이상의 자의 주택에 저렴한 금액으로 세를 들어 살 수 있고, 동거하는 동안 브띠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30세 미만의 자는 무상으로 60세 이상의 자의 주택에 살면서, 브띠서비스가 포함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그림 1

세대 간 동거계약 구조도



2. 계약 내용

- ◆ 계약 내용에는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는 건물의 주소 및 거주 공간의 표면적, 주방·거실 등 공동 공간, 계약날짜 및 기간, 월세 금액, 30세 미만의 자가 제공하는 브띠 서비스의 종류, 각 당사자의 의무, 계약종료 절차와 조건 등이 포함된다.
- ◆ 세대 간 동거계약 시 30세 미만의 자가 매달 지급하는 월세는 유사한 주거시설의 일반 임대차 수준보다 크게 낮다. 민간 주택의 경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며,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과 관련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³⁾

3) 60세 이상의 자는 월세에 대해 별도로 소득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월세 금액이 파리지역의 경우 1평방미터당 연간 190유로(약 27만원), 그 외 지역은 1평방미터당 연간 14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할 경우 과세된다.

- ◆ 세대 간 동거계약 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30세 미만의 자가 제공하는 브띠서비스에는 함께 산책하기, 매주 1회 함께 저녁 먹기, 함께 영화 관람하기, 매주 1시간 동안 대화하기 등이 있다.
- 브띠서비스는 수익 창출 활동이 아니며,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각 당사자 간의 종속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60세 이상의 자가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사 보조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 ◆ 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양 당사자가 세대 간 동거계약 체결 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표 1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30세 미만의 자	• 60세 이상의 자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 • 주거시설 내에서 평온하게 생활해야 한다. • 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라 브띠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주거시설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차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다.
60세 이상의 자	• 30세 미만의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주거시설의 기능과 신체적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물의 위생을 확인해야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동거하는 동안 30세 미만의 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평온한 일상을 보장해야 한다.

- 세대 간 동거기간 동안 각 당사자가 공통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 내용에 명시된 임대 또는 전대 건물 내에서 상호 간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만약, 동거기간 동안의 계약내용, 각 당사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제1101조~제1231-7조)에 따른다.

4. 세대 간 동거계약 중개협회(Cohabilis)의 역할

- ◆ 프랑스에는 세대 간 동거계약을 원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세대 간 동거계약 중개협회(이하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세대 간 동거계약에 관련한 다양한 절차 마련과 검증을 하고 있다.
- ◆ 2020년부터 교육부에 의해 공익단체로 인정받은 협회는 프랑스 각 도시에 설립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파리(Paris)에는 상호약속연대(Le Pari Solidaire) 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협회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 후보자 선정(Sélection des candidats)

- 세대 간 동거계약을 희망하는 60세 이상의 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30세 미만의 자의 사생활 존중 및 개인 시간 등에 관해 설명한다.
- 세대 간 동거계약을 희망하는 30세 미만의 자와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여, 60세 이상의 자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 60세 이상의 자 및 30세 미만의 자에게 공통으로 따라야 할 규칙이 있음을 상기시킨 후 계약 후보자를 선정한다.

계약조건 설정 및 체결(Formation de binômes)

- 60세 이상의 자와 30세 미만의 자와의 개별인터뷰를 통해 서로 잘 맞는 세대 간 동거계약 당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체결은 임대 또는 전대하려는 60세 이상의 자의 주거지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신의 요구사항과 공동생활 조건에 관해 이야기한 후, 공동생활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동거생활(Accompagnement) 확인

- 세대 간 동거계약이 체결된 후 각 당사자는 한 달간 상호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협회는 각자가 느끼는 동거생활이 어떤지에 관해 묻고 살핀 후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협회는 계약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서로의 준수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개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각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관리에 개입할 수 있으며, 동거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세대 간 동거계약 관련 법령

1.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

◆ 계약의 개념

- 30세 미만의 자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쉽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자가 세대 간 동거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제117조).

2. 「건축 및 주택법전」

◆ 계약 규율 및 사전통지

- 60세 이상의 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계약으로 「민법전(code civil)」에 의해 규율된다(제L.631-17조 제1항).
- 60세 이상의 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세대 간 동거계약 규정에 따라 주택 일부를 30세 미만의 자에게 전대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L.631-17조제2항).

◆ 계약 기간 및 월세

- 세대 간 동거계약의 기간과 월세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한다(제L.631-17조 제3항).
- 세대 간 동거계약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L.631-17조 제4항).

◆ 브피서비스 및 비종속 관계

- 세대 간 동거계약에는 월세 이외에도 30세 미만의 자에 의한 브피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브피서비스는 당사자 누구에게도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제L.631-18조 제1항).
- 세대 간 동거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30세 미만의 자의 브피서비스로 인해 각 당사자 사이에 어떤 종속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제L.631-18조 제2항).

3. 「세대 간 동거 현장에 관한 2020년 1월 13일 명령」

◆ 세대 간 동거 현장 집행 책임

- 보건부 장관, 국토통합부 장관은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세대 간 동거 현장 집행에 대해 각각의 책임이 있다(명령 제2조).

◆ 세대 간 동거 현장의 주요 내용

- 노인의 고독을 예방하고 지원한다.
- 세대 간 동거계약의 임대인 또는 전대인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월세를 받고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한다.
- 협회의 의무
 - 세대 간 동거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회적 효용과 연대적 접근방식을 가치있게 생각한다.
 -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조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의료주체들과 협력한다.
 - 세대 간 동거계약에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의 자와 30세 미만의 자의 요구 및 기대를 분석한다.
 - 1회 이상 사전 회의 후 세대 간 동거계약을 체결시키며, 동거기간 동안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시사점

- ◆ 프랑스는 2004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이를 법제화하여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60세 이상의 자는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자는 저렴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 특히, '세대 간 동거계약'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함께 산책하기,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등의 브띠서비스를 계약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세대 간의 사회적 관계 유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 ◆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주거문화나 생활양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주거 형태와 연금을 포함한 경제력 수준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점들이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 도입 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 249-5708